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해 외 농 업 · 산 립 자 원 개 발 협 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개발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농업·산림산업 투입제 관련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 1) 해외농업자원 확보에 필요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제 관련 사업을 포함함
- 2) 해외산림자원 확보에 필요한 임업기계, 임업자재, 임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산림산업투입제 관련 사업을 포함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과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내외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의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자 대상의

모니터링 실시와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안 제9조)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임업진흥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반입명령 요건 규정,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절차(안 제27조 신설)

- 1) 반입명령의 요건 중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농산물 또는 축산물,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함
- 2) 반입명령의 요건 중 “비상사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규정함
- 3)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대상 물량, 반입 가격, 반입 시기, 명령의 사유 및 내용과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4)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여부에 관한 사항
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반입명령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27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대상 물량, 반입 가격과 반입
시기,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
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과 관련하
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관련한 반입조건에 관
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농림축산
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일 이상(긴급한 경우는 3
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바.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27조의3 신설)

1) 반입가격은 반입명령 시점에서의 국제거래가격 상당의 금액으로
하고, 운반비 및 부대비용은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
의 비용으로 하며, 그 밖에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한 금액으로 함

2)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안 제27조의4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
금액, 보상방법과 결정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외농업자원 확보에 필요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관련 사업

제2조제4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산림자원 확보에 필요한 임업기계, 임업자재, 임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산림산업투입재 관련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내외 경제 사정이나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④ 제2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
2.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④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명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2. 반입대상 물량
3. 반입 가격
4. 반입 시기
5. 명령의 사유 및 내용
6.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7.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의 절차로서 반입명령 여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반입명령에 관한 의견 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조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2. 반입대상 물량
3. 반입 가격
4. 반입 시기
5.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2. 의견제출의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의3(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반입가격: 반입명령 시점에서의 국제거래가격 상당의 금액
2. 운반비 및 부대비용: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3. 그 밖에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반입명령 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한 금액

② 제1항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명·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산림조합중앙회”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

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따른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의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보조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융자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중 “다시”를 “그 처분 후 다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50	200	300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100	150	300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15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해외농업자원 확보에 필요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관련 사업</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 ----- <u>제4호</u> ----- -----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u>	3. <u>해외산림자원 확보에 필요한 임업기계, 임업자재, 임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산림산업투입재 관련 사업</u>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4. (생 략)

⑥·⑦ (생 략)

<신 설>

을 위한 조사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
제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농
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 및 산
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국제
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국내
외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
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
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
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종합계획을 작

<신 설>

제9조(현황보고) (생 략)

<신 설>

<신 설>

성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
업을 시행하는 산림청 소속 기
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
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
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
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내외 경제 사
정이나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현황보고)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
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
업자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
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제2항의 모니터링을

<신 설> 제27조(반입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④ 제2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반입명령)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

들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대상 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통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는 각각 다음
--	--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

2.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④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명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2. 반입대상 물량

3. 반입 가격

4. 반입 시기

5. 명령의 사유 및 내용

6.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7.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 설>

<신 설>

<신 설>

사항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의 절차로서 반입명령 여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반입명령에 관한 의견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조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

원

2. 반입대상 물량

3. 반입 가격

4. 반입 시기

5.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
련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
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
라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
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일 이상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긴
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2. 의견제출의 방법 등과 그 밖

<신 설>

<신 설>

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산림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7조의3(반입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반입가격: 반입명령 시점에서
의 국제거래가격 상당의 금액

2. 운반비 및 부대비용: 반입명
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3. 그 밖에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반입명
령 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
한 금액

② 제1항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반입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명·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

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③ (생략)

<신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따른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의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보조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융자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2040